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23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11. 6.
3. 회부연월일: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고용보험 도입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의 위험이 낮았고,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업지원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사학연금 가입자 직군의 다양화로 퇴직 교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67.6%) 또한 높은 실정임. 이러한 고용환경 변화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실업대책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제33조, 제48조의2제3항).
- 나. 구직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타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 다. 지급된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수급에 협조한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0조제2항, 제58조).

Ⅲ. 검토의견

□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u>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u>	11. ----- <u>제48조의2제3항</u>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제33조(급여) ----- ----- ----- -----

현행	개정안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u>지급한다</u>. <u><신 설></u>	----- ----- ----- ----- <u>지급하며, 교직원의 퇴직에 따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u> <u>제33조의4(구직지원금) ①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u> <u>1. 재직기간(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한다)이 6개월 이상일 것</u> <u>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u> <u>3. 제33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u> <u>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u> <u>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퇴직 여부,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3조의5(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 ① 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u> <u>1.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였거나, 임용 당시 정해진 임기의 만료로 퇴직한 사람</u> <u>2. 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가.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u> <u>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u> <u>3.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u>

현행	개정안
<u><신설></u>	<u>나. 제2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u> <u>학교기관의 장의 권고 등으로</u> <u>퇴직한 경우</u> <u>다.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u> <u>1. 18개월 이내에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u> <u>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u> <u>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연계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u> <u>제33조의6(구직지원금일액 및 수급기간) ① 구직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 상한액과 구직지원금일액에 관하여는 「고용보험</u>

현행	개정안
	<u>법」 제45조제1항·제5항 및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초일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30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일액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u> <u>③ 구직지원금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5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수급기간은 12개월의 기간에 공단이 제33조의4제1항의 퇴직을 확인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각각 “구직지원금”으로, “직업안정기관”은 각각 “공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로, “대기기간”은 각각 “구직지원금 신청 후 7일이 경과한 날”로, “이직”은 각각 “퇴직”으로 한다.</u>

현행	개정안
	④ <u>구직지원금은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기간동안 해당 일수만큼 지급한다.</u> ⑤ <u>구직지원금은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취업의 기준 및 신고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준용한다.</u>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생략)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u>금액</u>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 ----- ----- <u>금액(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지급 전액으로 한다)</u> -----.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 ② (생략)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u>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u>	③ ----- ----- <u>다음 각 호와 같다.</u>

현행	개정안
<u>조급여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④ (생략) <u>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u>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 2. 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 ④ (현행과 같음) <u>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u> 1.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3.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

2023년 기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 가입자 중 퇴직자 수는 3만 3,282명임.

사학연금 퇴직자를 재직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년 미만 재직자 수가 2만 2,509명으로 전체 퇴직자 수의 67.6%를 차지하는데, 가장 많은 인원은 대학 등 교직원 1만 4,209명이고, 그 다음은 유치원 교직원 7,925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사학연금 퇴직자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¹⁾	특수학교	법인	합계
10년 미만 재직	7,925	337	14,209	18	20	22,509(67.6)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847	185	1,623	20	10	2,685(8.1)
20년 이상 재직	104	3,562	4,295	118	9	8,088(24.3)
합계	8,876	4,084	20,127	156	39	33,282(100.0)

주: 1) ‘대학 등’에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병원이 포함됨

1. 괄호 안은 전체 퇴직자 수 중 해당 기간의 퇴직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와 관련하여 대학 등 및 유치원 교직원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2023년 기준 121개 유치원과 3개 대학 등이 폐교되는 등 지속적인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퇴직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폐교 현황

(단위: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유치원	245	205	130	136	121	837
초·중·고	4	5	1	0	1	11
대학 등 ¹⁾	0	1	1	1	3	6
특수학교	2	0	0	0	0	2
법인	0	0	1	2	2	5
합계	251	211	133	139	127	861

주: 1) ‘대학 등’에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병원이 포함됨

1. 「사학연금법」이 적용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또한 대학 등 교직원의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의 72.5%인 24만 2,086명에 이르고 있고,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유치원 교직원 가입자 수도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의 10.0%인 3만 3,252명에 이르고 있어, 초·중·고 교직원(16.2%, 5만 4,209명)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사학연금 가입자 수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 구성비 ²⁾
유치원	38,776 (△7.4)	36,802 (△5.1)	34,978 (△5.0)	34,001 (△2.8)	33,252 (△2.2)	10.0
초·중·고	62,113 (△3.8)	59,903 (△3.6)	58,016 (△3.2)	56,275 (△3.0)	54,209 (△3.7)	16.2
대학 등 ¹⁾	218,454 (4.3)	226,823 (3.8)	233,023 (2.7)	238,677 (2.4)	242,086 (1.4)	72.5
특수학교	3,563 (△2.6)	3,535 (△0.8)	3,501 (△1.0)	3,466 (△1.0)	3,469 (0.1)	1.0
학교법인	791 (△1.2)	801 (1.3)	804 (0.4)	812 (1.0)	836 (3.0)	0.3
합계	323,697 (1.1)	327,864 (1.3)	330,322 (0.7)	333,231 (0.9)	333,852 (0.2)	100.0

주: 1) '대학 등'에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병원이 포함됨

2) 2023 구성비는 2023년도에 전체 가입자 수 중 해당 학교급의 가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임

1.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사학연금 가입자 중 단기간(1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인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사학연금 가입자가 1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은 받을 수 없으나,¹⁾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음²⁾.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책임이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은 폐교 등 비자발적 사유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감³⁾ 소관 지역 내 학교로의 전보 등을 통해 교

1)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이하 생략)

2) 「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이하 생략)

3) 「교육공무원법」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나, 각 학교별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⁴⁾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다른 학교로의 전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교직원으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움.

또한,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별정직공무원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⁵⁾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는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것임.⁶⁾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교직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비자발적 사유로 현소속기관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처우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일반근로자
○ 전보 불가능 ○ 고용보험 적용 제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4호)	○ (교육공무원)타학교 등 전보 ○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가능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나,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고용보험법」 제37조 등)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임.

6) 「고용보험법」(법률 제8959호), 2008.3.21. 개정, 2008.9.22. 시행

개정안은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안 제33조(급여)에서 교직원의 퇴직에 따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 외의 조항에서 ‘① 지급요건, ② 지급액 및 지급기간, ③ 권리 보호, ④ 재원, 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해당 제도와 구직지원금의 각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 구직지원금과 구직급여 비교

구분	구직지원금 (「사학연금법 개정안」)	구직급여 (현행 「고용보험법」)
④ 지급요건 안 제33조의4 (구직지원금), 제33조의5 (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	○ 지급요건 - 퇴직한 교직원 중, 아래 모두 해당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u>수급자격 제한사유</u>에 미해당 · 적극적 재취업 노력 ○ 공단에서 퇴직 여부, 재취업 노력 등 확인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한 근로자 중, 아래 모두 해당 ·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u>이직사유</u>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미해당 · 적극적 재취업 노력
	* <u>수급자격 제한사유</u> - 구직지원금 수급 자격 없음 · 정년 도달자, 임기 만료 퇴직자 · 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급자 중,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본인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등으로 퇴직 ·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원 중, - 전직 또는 자영업 위해 퇴직 - 금고 이상 형 확정, 징계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교기관의 장의 권고 등으로 퇴직 - 기타 공단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	* 제58조(<u>이직 사유</u>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중,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 중, · 전직 또는 자영업 위해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사업주 권고 이직 ·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
	- 구직지원금 지급 제한 · 18개월 이내 구직지원금 수급 · 퇴직연금 수급요건 충족자(폐교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은 제외) · 조기퇴직연금 수급 중인자 · 연계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자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구분	구직지원금 (「사학연금법 개정안」)	구직급여 (현행 「고용보험법」)
② 지급액 및 지급기간 안 제33조의6 (구직지원금일액 및 수급기간)	○ 구직지원금일액: 기초일액×60%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기준소득월액의 일단위 금액 - 기초일액 상한액: 11만원 *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조정 가능 - 기초일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일단위 금액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 평균임금 - 기초일액 상한액 11만원 * 조정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액 변경 고려 - 기초일액 하한액: 최저기초일액
	○ 지급기간: 재취업 노력 인정받은 기간(최대 270일) *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지급 중단	*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③ 권리 보호 안 제40조 (권리의 보호)	○ 구직지원금 전액 압류 금지 규정	*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④ 재원 안 제2조(정의),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는 급여 외에 구직지원금 추가	*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80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실업급여 지급 규정
⑤ 관리 안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 학교기관 장이 공단에 손해배상하는 사유로,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지원금을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를 추가	* 제116조(벌칙) -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현행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 정리

① 지급요건

개정안은 제33조의5(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을 포함하여 제33조의4(구직지원금)제1항에서 구직지원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각각 사학연금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이 중 안 제33조의4(구직지원금)제1항은 퇴직한 교직원이,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미해당, ㉣ 적극적 재취업 노력’에 모두 해당되어야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은 교직원이 근무한 학교기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구직지원금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학교에 일정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그 기간을 현행법 ‘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인용조항은 퇴직수당 지급시 합산·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직지원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재직기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학연금법 개정안」	
제33조의4(구직지원금) ①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1. 재직기간(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한다)이 6개월 이상일 것	
현행 「사학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포함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다음으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 적극적 재취업 노력’ 요건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교직원의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동 급여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안 제33조의5(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에 세부내용이 규정된 ‘㉔ 수급자격 제한사유 미해당’은 교직원이 재직 중 형벌 확정 등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실상 본인 의사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에 구직지원금을 수급하거나 퇴직연금 등의 수급이 가능한 경우 구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이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만, 개정안은 구직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에서 퇴직연금 수급요건 충족자 중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 충족자를 제외하고 있어(안 제33조의5제2항제2호),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구직지원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됨.

이는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교직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 이후 퇴직연금 수급 이전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소득 공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⁷⁾

7) 참고로,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을 ‘퇴직한 때부터 즉시 3년간만 지급한 후,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지급을 재개’하도록 지급 시점 및 기간을 변경하면서, 구직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63호)」에 포함되어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구직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지원금은 현행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신청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공단은 안 제33조의4(구직지원금)제1항에 규정된 각 지급요건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 제33조의4제2항에서는 공단이 ‘제1항의 퇴직 여부,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은 퇴직 여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 여부’를 삭제하고, 공단이 제1항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사학연금법」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학연금법 개정안」 제33조의4(구직지원금) ①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1. 재직기간(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한다)이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제33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퇴직 여부,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급액 및 지급기간

개정안은 제33조의6(구직지원금일액 및 수급기간)에서 구직지원금 일액, 기초일액 상한액, 지급기간은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준용하되, 기초일액, 기초일액 하한액에 대해서는 사학연금의 급여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고 있음.

수급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유사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과 그 하한액은, 사학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특수성, 수급자 간의 형평성, 연금 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표 6] 구직지원금과 구직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비교

구분	구직지원금 (「사학연금법 개정안」)	구직급여 (현행 「고용보험법」)					
일액	○ 기초일액×60%	○ 기초일액×60%					
기초일액	○ 기준소득월액의 일단위 금액 －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기준소득월액: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기초일액 상한액	○ 11만원 *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조정 가능	○ 11만원 * 조정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액 변경 고려					
기초일액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일단위 금액 －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3만 733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원: 4만 280원 －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2만 7,337원 － 기능직 사무직원: 2만 4,503원	○ 최저기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상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2024년 기준 9,860원)을 곱한 금액					
지급기간	○ (구직지원금/구직급여) 재취업 노력/실업을 인정받은 기간						
	구분	재직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직일/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120일 120일	150일 180일	180일 210일	210일 240일	240일 270일

자료: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 등 해당 조항 정리

③ 권리 보호

개정안은 제40조(권리의 보호)에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구직지원금 지급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구직지원금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수급권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④ 재원

개정안은 제2조(정의)제1항제11호,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제3항에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사학연금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제외한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지급을 위해,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재해보상부담금)을 적립하여 조성된 것임⁸⁾.

8) 「사학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의 누적액은 2019년에 2,203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3,53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고, 연간 예상 퇴직자를 기준으로 한 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현행제도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⁹⁾

[표 7]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부담금)	730	777	794	806	827
지출(급여)	459	465	448	521	525
운용손익 등	68	47	△25	△129	193
연적립액	339	359	321	156	495
누적액	2,203	2,562	2,883	3,039	3,534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 수급권자의 상황변화로 발생한 비자발적 퇴직을 재해 상황으로 간주하고, 구직지원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로 추가하여, 현행 사학연금 재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구직지원금 신설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전망

(단위: 억원)

구분	수입 ¹⁾ (A)			지출 ²⁾ (B) (재해보상급여)			연간조성액 (A-B)	누적액
	부담금	운용수익	소계	기존급여	구직지원금	소계		
2025	917	174	1,091	600	275	875	216	4,048
2030	1,067	216	1,283	648	302	950	333	5,487
2035	1,211	260	1,471	711	360	1,071	400	7,387
2040	1,307	306	1,613	765	413	1,178	435	9,474
2045	1,366	372	1,738	820	426	1,246	492	11,807
2050	1,413	451	1,864	866	435	1,301	563	14,477
2055	1,434	541	1,975	896	456	1,352	623	17,475
2060	1,431	643	2,074	915	480	1,395	679	20,764
2065	1,421	756	2,177	934	511	1,445	732	24,325
2070	1,391	874	2,265	950	543	1,493	772	28,106

주: 1) 수입: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값(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추계 결과 적용)

- 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총액의 454/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서 부담

- 운용수익: 전년도까지 조성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 운용수익률 적용

2) 지출: 기존급여(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추계 결과 적용)와 구직지원금을 더한 값

- 기존급여: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

- 구직지원금: 구직지원금 신설에 따른 소요액

1. 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발췌함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참고로,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해당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비자발적 퇴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 것으로 보임.

[표 8]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개정안 내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폐교 관련 부분)	처리경과
1	고용보험법 (제2023712호)	임재훈 의원	2019.11.11./ 2019.11.12.	환경노동 위원회	폐교 증가 등에 따른 사립대학 교직원 의 고용불안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 직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임기만료 폐기
2	고용보험법 (제2106397호)	김철민 의원	2020.12.11./ 2020.12.14.	환경노동 위원회	폐교 증가 등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의 고용불안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 직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임기만료 폐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다만, 현행법상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의 용도에는 구직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근거하여 적합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용도인 구직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급여가 지급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적합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구직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 주체인 학교법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⑤ 관리

개정안은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에서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원의 거짓 또는 부정한 구직지원금 청구에 협조한 경우 공단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기관 장은 구직지원금의 주요 지급요건인 퇴직사유 등을 확인하여 줄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등의 관리를 위해 학교기관 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서 부정수급자 및 이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학교기관 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학연금 내 급여 관리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학교기관 장에 대해 부과하는 책임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급여 관리와 관련하여, 구직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사학연금 급여 일반에 적용되는 현행법 조항에 따라, 공단은 해당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독촉,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음.

구직지원금은 사학연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부정수급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지급요건 확인 단계부터 면밀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 발생시 관련 조항에 따라 학교기관 장에 대한 손해배상, 수급자에 대한 환수금 징수 등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음.

「사학연금법 개정안」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3.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

현행 「사학연금법」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폐교 증가, 사학연금 가입자의 직군 다양화로 퇴직교직원 중 단기재직자(재직기간이 10년 미만) 비중이 2/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학연금 제도 내 고용보험 성격의 구직지원금 도입이 필요함.
-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수급자격 제한사유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따르되, 사립학교 교직원 직군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형평성과 개별적 타당성 간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 임시, 조건부 임용자 가입 대상 제외, 가입자 대부분이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신분, 근로관계 등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상이함
- (지급 수준)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조항 준용으로 구직지원금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적절히 맞추고 있음.
- (재원)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보장기금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 활용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 이외에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등 부조 성격의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도 사용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견없음

-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상태 악화, 단기재직자 증가 등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고용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들의 실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소속 기관이 폐교되더라도 전출이나 전보 등을 통해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이 불가피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 제도 내에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를 신설하여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공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189